

세법연구 10-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

홍범교 · 김태훈 · 마정화

2010.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 론	7
II. 특정외국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9
1. 개관	9
2. 우리나라의 CFC 과세제도	12
가. 적용대상	12
나. 과세소득	14
다. 이중과세 방지장치	17
III. 주요국의 CFC 과세제도	19
1. 미국	19
가. 개관	19
나. 적용대상	19
다. 과세소득	21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29
2. 일본	30
가. 개관	30
나. 적용대상	31
다. 과세소득	34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37
3. 호주	40
가. 개관	40
나. 적용대상	41

다. 과세소득.....	46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54
4. 뉴질랜드.....	55
가. 개관.....	55
나. 적용대상.....	55
다. 과세소득.....	57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6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64
1. 국제비교.....	64
가. 적용대상.....	64
나. 과세소득.....	66
다. 이중과세 방지장치.....	68
2. 시사점.....	70
가. 역외투자펀드(FIF) 과세제도의 보완적 사용.....	70
나. 외국 도관체(foreign look-through entity)의 CFC 인정.....	71
다. CFC 적용대상 납세자 범위의 확대.....	71
라. 내국인 지분을 결정방법 다양화.....	72
참고문헌.....	73

표목차

〈표 Ⅲ-1〉 미국 CFC 과세소득 범위.....	21
〈표 Ⅲ-2〉 실제 배당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40
〈표 Ⅳ-1〉 CFC 세제의 적용대상 국제비교.....	66
〈표 Ⅳ-2〉 CFC 세제의 과세소득 결정방식 국제비교.....	68
〈표 Ⅳ-3〉 CFC 세제와 관련된 이중과세방지장치 국제비교.....	69

그림목차

[그림 Ⅱ-1] CFC의 과세체계.....	11
-------------------------	----

I. 서론

-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 간 자본이동은 7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해외포트폴리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자본주의가 일찍 발전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남.

- 한편, 국제 간 자본이동은 그 거래의 복잡성, 국가 간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위험을 증대시켰음.
 -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조세회피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응하는 제도를 설계하였음.
 - 이 중 대표적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피지배외국회사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 CFC Regime)가 있음.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은 조세피난처¹⁾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는 조세회피방지제도임.
 - 이는 1962년 미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로 2010년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0개국이 운영하고 있음²⁾.

1) OECD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Tax Havens)로 지정되어 있었던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가 2009년 5월에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리스트에서 삭제되면서 현재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는 없는 상태임
(http://www.oecd.org/document/57/0,3343,en_2649_33745_30578809_1_1_1_1,00.html).

2) <http://www.ibfd.org>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라는 규정으로 피지배외국회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규정 등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하지만 위의 규정은 지배요건과 적용대상을 회피하는 사례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 본 규정은 50% 이상의 지배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적용할 여지가 없음.
 - 또한 적용대상을 특정외국법인으로 한정하여 법인형태가 아닌 파트너십, 신탁 등의 실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하에서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나³⁾,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됨.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두 가지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를 개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배요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별도의 과세규정으로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나, 독일은 피지배외국회사 과세규정에 함께 두고 있음.
 - 또한 파트너십 또는 신탁 형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독일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과 호주는 피지배외국회사 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피지배외국회사에 대한 조세회피방지 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 개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설명하고, 제Ⅲ장에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과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제Ⅳ장에서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제시함.

3) 홍범교·김태훈·마정화,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II. 특정외국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1. 개관

- 피지배외국회사(이하 'CFC') 규정은 조세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회피방지제도임.
 - 이는 1962년 미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로 독일(1972년), 캐나다(1976년), 일본(1978년), 프랑스(1980년), 영국(1984년), 뉴질랜드(1988년) 순으로 CFC 과세규정을 수용함.
 - 우리나라는 1996년에 도입하였고, 2010년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0개국⁴⁾이 운영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가공의 자회사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여 세후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높은 자본수출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대응세제를 필요로 하게 됨.
 - 이렇게 조세피난처에 유보한 소득을 당해 자회사의 모회사인 특정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임.

- CFC 과세제도는 과세소득의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거래적 접근방식(Transactional Approach)과 실체적 접근방식(Entity Approach)으로 구분됨⁵⁾.

4)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2010년 도입),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http://www.ibf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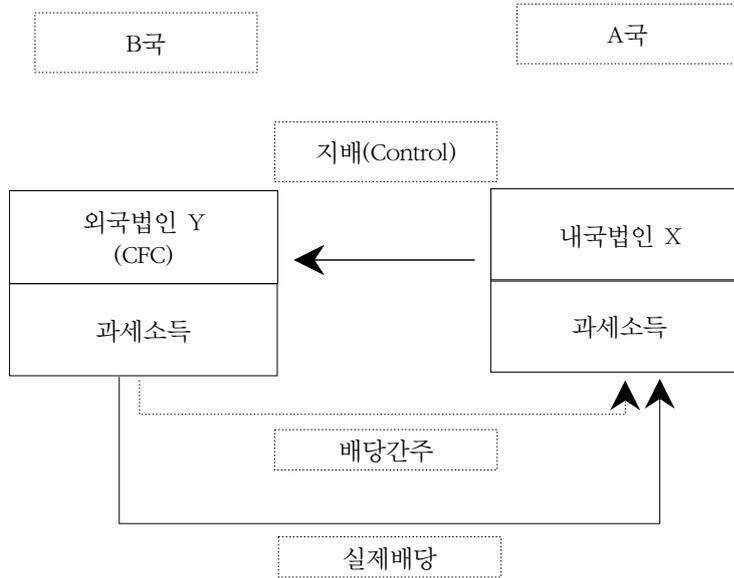
- 거래적 접근방법은 피지배외국회사가 수취한 소득의 특성(예를 들어, 수동소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지배외국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은 과세 여부 결정시 고려되지 않음.
 - 이 방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부담이 되는 반면,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실제적 접근방법은 소득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피지배외국회사 자체에 초점을 두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은 조세피난처 등 일정한 지역에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CFC 과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방식(Jurisdictional Approach)이라고도 함.
 - 이 방식은 적용하기 간편해서 납세협력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적용지역에 따라 CFC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면제소득규정⁶⁾을 두어 제도가 더욱 복잡하게 됨.
- CFC 과세제도의 과세체계는 적용대상, 과세소득, 이중과세방지(공제규정)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적용대상에는 피지배외국회사(지배요건), 내국인, 저세율국으로 구성됨.
 - 과세소득에는 소득유형(주로 투자소득)과 면제소득이 논의됨.
 - 이중과세방지규정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기과세된 소득의 배당 또는 양도시 처리로 구성됨.

5) Renata Fontana, "The Uncertain Future of CFC Regim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Part 1," *IBFD European Taxation*, June 2006, pp. 260~261.

6) 주요 면제소득 규정의 유형은 배당면제, 사업소득면제, 공개거래면제, 동기면제로 구분됨.

1. 배당면제(Distribution Exemption): CFC는 CFC 소득의 상당부분을 투자자의 거주지국에 배당해야 함.
2. 사업소득면제(Active Income Exemption): CFC는 투자사업과정을 제외한 실질적인 상사거래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맺어야 함.
3. 공개거래면제(Publicly Traded Exemption): CFC는 거주지국에서 인정하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야 함.
4. 동기면제(Motive Exemption): 지배주주는 국외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연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CFC를 사용할 만한 경제적 목적과 합리적인 사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림 II-1] CFC의 과세체계



- 〈전제〉
1. Y법인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100 발생(추후 50 배당)하고 X·Y법인 모두 다른 소득은 없음
 2. X법인은 Y법인의 100% 주주
 3. A국(전세계소득 과세)의 법인세율은 20%, B국(원천지국 과세)의 법인세율은 10%
 4. A국과 B국의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10%로 원천징수

〈B국〉				〈A국〉				
	구분	과표	세액		구분	과표	세액	비고
소득 발생	법인세 (Y)	100	10	배당간 주	법인세 (X)	100	20 -10 =10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실제 배당	원천세 (X)	50	5	실제배 당	법인세 (X)	0	-5	· 익금불산입 ·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 투자자의 거주지국 세율에 따라 이자소득 100에 대해 최종납세액은 20으로 유지

2. 우리나라의 CFC 과세제도

- 우리나라의 CFC 과세규정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로 소개되어 왔음.
 - 외환·자본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1995년 말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7조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도입함.
 - 2009년말 세법개정은 CFC 과세규정의 적용지역에서 조세피난처를 제외하면서 CFC 과세규정의 제목을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에서 ‘특정외국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변경함.

가. 적용대상

1) 내국인

- CFC 과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인 ‘내국인’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를 말함⁷⁾.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간접소유비율 계산규정을 준용⁸⁾.
 -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판단할 때 민법 제79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⁹⁾.

7) 국조법 제17조 제2항 전단; 따라서 국내 모회사 A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국내 자회사 갑, 을, 병, C, D 회사가 각각 15%, 15%, 10%, 30%, 30%를 출자하여 조세피난처에 F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A, C, D 회사만 CFC 과세규정을 적용받게 됨.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6, 2006.12.13

8) 국조법 시행령 제34조

9) 국조법 제17조 제2항 후단

2) 특정외국법인

- 내국인의 출자를 전제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CFC 세제를 적용함¹⁰⁾.
 - CFC 과세제도에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규정에 의함.
 - 따라서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함¹¹⁾.
 - 또한 외국법인이 모회사인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인이 형제관계인 경우, 외국법인 또는 내국인 중 일방이 타방에 대해 또는 제3자가 쌍방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를 인정함¹²⁾.
 - 이 때에는 특수관계자별로 내국인 요건인 20% 이상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해야 CFC 세제가 적용됨¹³⁾.

-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내국인이 중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짐¹⁴⁾.
 - 만일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외국법인 주식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중간법인의 외국법인 주식에 대한 직접소유비율과 동일함.
 - 그러나 5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중간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중간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의 합계로 산정함.

10) 국조법 제17조 제1항

11)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12)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3~5호

13)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텍스, 2010, p.1056

14)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 저세율 국가

-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소위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CFC 세제를 적용함¹⁵⁾.
 - 이 때 저세율 국가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종전에 조세피난처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조세부담률 이외에도 감면비율을 함께 고려하였으나, 외국법인에 있어서 감면 후 실제 조세부담률이 높은 경우에도 CFC 세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지적¹⁶⁾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 저세율 국가에 특정외국법인의 소재 여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다만, 저세율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더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저세율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간주함¹⁷⁾.

나.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접근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함.
 - 즉,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에 대해 적용함¹⁸⁾.

15) 국조법 제17조 제1항

16) 이진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제7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p. 129

17) 국조법 제18조 제2항

18) 국조법 제17조 제1항

- 한편, 실제적 접근방법을 취하더라도 해외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까
 지 CFC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적용배제규정을 두고 있음.
- 첫째, 외국법인이 저세율 국가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
 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 CFC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¹⁹⁾.
-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업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을 하더라도 CFC 과세제도를 적용함.
-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또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²⁰⁾을 하는 특정
 외국법인(단,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매입·매출액이 총매입·매출의 5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해당 업종 매입·매출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매입·매출액의 50%를 초과해야 함²¹⁾)
 -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²²⁾으로 하는 법인
- 단, 외국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소재지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CFC 과세제도를 적용
 하지 않음²³⁾.
- 둘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지주회사에 대해 고정된 시
 설을 통한 사업 경영 여부에 상관없이 CFC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²⁴⁾.
- 즉,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위험분산 및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
 는데, 이는 조세회피보다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19) 국조법 제18조 제1항

20)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21)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2)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
 키는 사업을 말함(국조법 시행령 제36조)

23) 국조법 제18조 제4항

24) 국조법 제18조의 2

- 단,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해외자회사 요건²⁵⁾과 해외지주회사 요건²⁶⁾을 충족해야 함.

2) 과세소득 제외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CFC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²⁷⁾.

3)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함²⁸⁾.

$\text{배당간주금액} = \text{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times \text{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하는데, 배당간주금액 계산시 주식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곱셈방식에 의함.

25)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 3)

1.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국조법 제17조제1항(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26) 국조법 제18조의 2

제1호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제2호 이러한 자회사로부터 해외지주회사가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일 것

27) 국조법 제17조 제4항

28)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내국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경유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계산함²⁹⁾.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간에 2개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³⁰⁾.

다. 이중과세 방지장치

1)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분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간주배당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에 바로 공제받는 것임.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차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소급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2)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³¹⁾.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선이익·선배당 원칙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

29)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30)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31) 국조법 제20조 제1항

의 합계액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³²⁾.
 - 이월익금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10년간 양도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실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이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

32) 국조법 제20조 제2항

Ⅲ. 주요국의 CFC 과세제도

1. 미국

가. 개관

- 미국은 미국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장기과세이연에 대응하기 위해 1962년에 CFC 세제를 도입함³³⁾.
 -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시켜 과세상 혜택을 누리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반이연세제 규정들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 CFC 세제임.
 - 또한 CFC 세제의 지배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분산시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PFIC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나. 적용대상

1) 미국 주주

- CFC 세제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CFC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미국 주주(U.S. Shareholders)임³⁴⁾.
 - 미국 주주는 거주자, 국내 법인, 국내 파트너십, 국내 트러스트 및 국내 유산재단을 포함함³⁵⁾.

33) Larkins, Ernest R.,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2004, pp.241~244

34) IRC §951(b)

35) IRC §957(c)

- 다만, 보험소득과 관련한 특별규정³⁶⁾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종속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companies)³⁷⁾인 경우에는 10%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지분 보유자를 미국 주주로 봄.
 - 이 규정은 CFC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대형종속보험사(super captive)가 주주의 지분을 분산시킴에 따라 CFC 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됨³⁸⁾.
- 10%의 주식보유요건은 직접 또는 간접 지분율과 의제지분율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함.
 - 1개 이상의 외국 실체를 통해 외국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간접보유(indirect ownership)를 인정함.
 - 따라서 국내 실체를 통해 외국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보유가 인정되지 않고, 의제보유를 검토해 보아야 함.
 - 의제보유(constructive ownership)는 가족, 도관(transparent entities), 회사의 지분에 대해 적용됨.
 -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율을 의제보유로 합산할 수 있음³⁹⁾.
 - 파트너십과 같은 도관이나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외국 회사의 지분율을 파트너 또는 주주의 의제보유로 인정할 수 있음⁴⁰⁾.
 - 미국 납세자가 도관이나 회사와 외국 회사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외국 회사의 지분을 도관이나 회사의 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⁴¹⁾.

36) IRC §953(c)(1)(A)

37) 종속보험회사란 자가보험의 한 방법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보험회사를 말함

38) Larkins, 앞의 책, p. 274

39) IRC §318(a)(1)

40) IRC §318(a)(2)

41) IRC §318(a)(3)

2) 피지배외국법인

- 10% 이상 요건을 충족한 미국 주주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CFC 주식의 의결권 또는 주식가치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CFC에 해당함⁴²⁾. (지배요건)
- 외국법인이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특별규정⁴³⁾에 따라 지배요건을 완화함.
 - Subpart F 소득인 보험소득이 총 보험료(premium)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요건을 25%로 완화함.

다. 과세소득

- CFC 세제상 과세소득의 범위는 거래적 접근방법에 의하며, 크게 ‘Subpart F 소득’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Subpart F 소득은 CFC가 수입(earning)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반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은 CFC가 창출한 수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표 Ⅲ-1〉 미국 CFC 과세소득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Subpart F 소득	특정 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 소득	외국기지회사 판매소득
		외국기지회사 용역소득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
		외국기지회사 석유관련소득
	보이콧 관련 소득	
	불법 뇌물 소득	
요주의 국가 소득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42) IRC §957(a)

43) IRC §957(b)

1) Subpart F 소득

- Subpart F 소득은 특정 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Foreign Base Company; 이하 FBC) 소득, 보이콧 관련 소득, 불법 뇌물 소득, 요주의 국가 소득의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됨⁴⁴⁾.

가) 보험소득

- Subpart F 소득에 포함되는 보험소득(insurance income)이란 CFC 소재국이 아닌 지역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재보험 또는 연금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⁴⁵⁾.
 - 이러한 보험소득은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⁴⁶⁾.
 - 보험으로 보장되는 위험이 CFC 소재국 밖에 존재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보험의 유형에 따라 다름.
 - 자산에 대한 보험은 피보험자산의 소재지, 책임보험은 피보험활동이 발생하는 곳, 의료보험 또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곳에 위험이 존재함⁴⁷⁾.

나) FBC(Foreign Base Company) 소득

- FBC 소득은 FBC 판매소득(sales income), FBC 용역소득(services income), 외국개인 지주회사(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소득, FBC 석유관련소득(oil-related income)으로 세분할 수 있음⁴⁸⁾.
 -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주로 세무상 이익을 위해 저세율 국가로 특정 소득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이들 유형이 규정됨⁴⁹⁾.

44) IRC §952(a)

45) IRC §953(a)

46) Larkins, 앞의 책, p. 273

47) Reg. §1.953-2(e)(g)

48) 종전에는 FBC 운송소득(shipping income)도 FBC 소득으로 구성하였으나, 2004년에 삭제됨

- FBC 판매소득은 개인용 재산을 대상으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당 재산의 제조와 소비가 CFC 소재국 밖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함⁵⁰⁾.
 - 당해 거래가 개인용 재산(personal property)를 포함해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FBC 판매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CFC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FBC 판매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CFC 소재국에서 사용될 용도로 매각되었거나 CFC 소재국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FBC 판매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이는 미국 다국적기업이 생산이나 유통 기능과 경제적 관련이 적은 국가에 외국회사를 설립할 때 미국 거주자에 대한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건임⁵¹⁾.
 - ‘제조’는 원재료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가공비가 총원가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업계에서 제조로 간주할 만한 중요 조립이 있는 경우에 인정됨.

- FBC 용역소득은 CFC가 법률상 CFC 소재국이 아닌 곳에서 특수관계자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보상, 수수료 등의 대가를 의미함⁵²⁾.
 -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의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역이 CFC 소재국과 그 외 국가에 걸쳐 제공된 경우에는 용역 수행 인력이 소비한 시간과 상대적 가치에 따라 FBC 용역소득을 결정하게 됨⁵³⁾.
 - 특수관계자가 감독, 기술고문, 노하우, 저가 자금조달 또는 임대를 통해 CFC를 보조하는 경우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CFC에 대한 대가로 특수관계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를 위한 용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
 - 그러나 특수관계자가 CFC의 활동을 단지 보증하는 경우 이러한 보증은 특수관

49) Larkins, 앞의 책, p. 261

50) IRC §954(d)(1)

51) Larkins, 앞의 책, p. 263

52) IRC §954(e)(1)

53) Reg. §1.954-4(b)

계자를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음⁵⁴⁾.

-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은 일반적으로 배당, 임대료, 이자, 로열티, 연금, 투자자산의 처분이익과 같은 수동적 소득을 의미함⁵⁵⁾.
 - 그러나 CFC가 능동적 사업에서 창출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나 로열티는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⁵⁶⁾.
 - 상품 달러, 증권 달러,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소득 대부분도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됨⁵⁷⁾.
 - FBC 판매·용역 소득과 달리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에 대해서는 CFC 소재국에서 창출한 수동적 소득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규정⁵⁸⁾이 있음.
 - 첫째, CFC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CFC 소재국에서 설립되었고 사업용 자산의 실질적 부분을 동일국에서 보유하는 경우 CFC가 그로부터 수취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으로 보지 않음.
 - 둘째, CFC 소재국에서의 자산 사용을 위해 CFC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와 로열티도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FBC 석유 관련 소득은 유정(油井)이나 천연가스정에서 추출한 광물의 가공, 운송, 분배, 판매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⁵⁹⁾을 말함.
 - 이들 활동과 관련된 용역이나 사업용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도 FBC 석유 관련소득에 포함됨.
 - 그러나 유정 또는 천연가스정이 소재한 국가에서 석유나 가스를 추출한 경우 또는 CFC 소재국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석유, 가스나 주요 석유·가스 제품을 판매

54) Reg. §1.954-4(b)

55) IRC §954(c)(1)

56) IRC §954(c)(2)

57) IRC §954(c)(2)(C)

58) IRC §954(c)(3)

59) CFC가 소재하는 국가가 아닌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을 의미

하거나 CFC 소재국에 정박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FBC 석유 관련 소득으로 보지 않음⁶⁰⁾.

- 또한 평균적으로 하루 1천 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의 소득은 FBC 석유 관련 소득으로 보지 않음⁶¹⁾.

다) 보이콧 관련 소득

□ CFC가 국제 보이콧(international boycotts)에 참여(participating) 또는 협조(cooperating)한 경우 해당 부분만큼 Subpart F 소득에 포함시킴⁶²⁾.

- 이 때 ‘참여 또는 협조’란 불특정 개인 또는 정부와 사업하는 조건으로서 CFC가 특정 국가, 보이콧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미국인, 특정 국적·인종·종교·지역의 개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와의 사업 영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⁶³⁾.

- Subpart F 소득이 되는 보이콧 관련 소득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됨⁶⁴⁾.

$\text{보이콧 관련 소득} = (\text{총소득} - \text{배당간주금액} - \text{미국원천소득}) \times \frac{\text{보이콧 국가 관련활동}}{\text{전세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소득: 공제 후 총소득 · 배당간주금액: 보이콧 관련 소득을 고려하기 전의 배당간주금액 · 미국원천소득: 공제 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미국원천소득 · 보이콧 국가 관련활동, 전세계 활동: IRC §999에 따라 결정
--

라) 불법 뇌물소득

□ CFC가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한 불법 뇌물 등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도

60) IRC §954(g)(1)
 61) IRC §954(g)(2)
 62) IRC §952(a)(3)
 63) Larkins, 앞의 책, p. 275
 64) Larkins, 앞의 책, pp. 275~276

Subpart F 소득에 포함됨⁶⁵⁾.

- 합법적인 뇌물이나 공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불법자금은 Subpart F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이러한 Subpart F 소득은 다른 유형과 달리 소득이 아니라 현금이나 비용의 흐름에 근거함⁶⁶⁾.

마) 요주의 국가 소득

- CFC 소득이 다음과 같은 특정국가⁶⁷⁾에서 발생한 경우 Subpart F 소득에 포함됨⁶⁸⁾.
 - 무기수출규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이 미국 방위 물자 구입을 허용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있는 경우
 - 미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
 -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2)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 CFC가 Subpart F 소득이 없더라도 '미국 내 자산(U.S. Property)'에 투자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소득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음⁶⁹⁾.
 - 수입의 존재는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을 의미하고, 미국법은 이러한 수입을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간접적인 배당금 지급으로 봄⁷⁰⁾.
- 연방내국세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미국 내 자산은 미국에 소재하는 유형재산, 국내 법인 주식, 법인을 제외한 미국 실체에 대한 채권, 미국 무체재산권을 포함⁷¹⁾.

65) IRC §952(a)(4)

66) Larkins, 앞의 책, p. 276

67) IRC §901(j)

68) IRC §952(a)(5)

69) IRC §956(a)

70) Larkins, 앞의 책, p. 277

71) IRC §956(c)(1)

- 실제 미국 내 자산은 법령에 열거된 제외대상⁷²⁾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예를 들어, 국채, 은행 예금, 매출채권은 미국 내 자산에서 제외됨.

3) 과세소득 제외 및 특별규정

가) 최소기준(De minimis exception) 및 전액합산규정(Full-inclusion rule)

- 외국기지회사 소득이나 보험소득이 1백만달러 미만이거나 CFC 총소득의 5% 미만인 경우에는 Subpart F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기지회사 소득과 보험소득의 합이 총소득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소득을 Subpart F 소득을 간주함⁷³⁾.

나) 고세율 예외(High-tax exception)

- CFC 소재국의 소득세 세율이 미국 최고 법인세율의 90% 이상인 경우(현재 31.5%) 보험소득이나 외국기지회사 소득을 Subpart F 소득을 제외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있음⁷⁴⁾.

다) 동일국 예외(Same-country exceptions)

-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미국 원천소득은 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이를 면세 하거나 경감세율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Subpart F 소득으로 보지 않음⁷⁵⁾.
 - 미국은 현재 이러한 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제하려는 CFC 세제가 필요하지 않음⁷⁶⁾.

72) IRC §956(c)(2)

73) IRC §954(b)(3)

74) IRC §954(b)(4)

75) IRC §952(b)

76) Larkins, 앞의 책, pp. 260~261

라) E&P(Earning and Profits) 제한(E&P Limitation)

- 배당소득 인식에 대한 일반원칙⁷⁷⁾과 유사하게 CFC의 Subpart F 소득은 CFC의 당기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 and profits; 이하 ‘E&P’)을 초과할 수 없음⁷⁸⁾.
 - CFC는 CFC 소재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의 전기 E&P 결손을 이용해 당기 E&P 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⁷⁹⁾.
 - 불법지급을 원인으로 당기 수익이 감소된 경우 CFC는 그 부분만큼 E&P를 증가시켜야 함⁸⁰⁾.
 - 또한 외국의 법적 제한 때문에 실제 배당이 제한⁸¹⁾된 경우에도 제한된 금액을 배당간주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CFC는 Subpart F 소득 상한을 결정할 때 당기 E&P에서 제한된 금액을 차감함⁸²⁾.
 - Subpart F 소득이 당기 E&P를 초과하는 경우 부족분의 범위 내에서 미래 E&P를 Subpart F 소득으로 분류함⁸³⁾.
 - Subpart F 소득 중 미인식 부분의 이월은 임시적인 E&P 부족으로 인해 미국 주주가 간주배당을 영원히 피할 수 없도록 함⁸⁴⁾.

4)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CFC의 미국 주주는 CFC의 Subpart F 소득과 CFC가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순수입(net earning) 중 지분비율만큼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함.
 - 미국 주주는 직접보유와 간접보유인 경우에만 간주배당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규정함⁸⁵⁾.

77) IRC §316(a)에 따라 주주가 실제 받은 분배금은 회사의 E&P를 한도로 배당소득으로 간주됨

78) IRC §962(c)(1)(B)

79) IRC §952(c)(1)(C)

80) IRC §964(a)

81) 현지 화폐를 달러로 전환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현지 화폐 의무보유비율을 예로 들 수 있음

82) IRC §964(b)

83) IRC §952(c)(2)

84) Larkins, 앞의 책, p. 258

- 의제보유비율은 '미국 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고려하지만, 간주배당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음⁸⁶⁾.
- Hopscotch Rule⁸⁷⁾에 따라 간접보유로부터 받은 간주배당금은 중간 외국회사의 총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미국 주주의 총소득을 증가시킴.
- 이러한 계산을 위해 미국 주주는 CFC의 과세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CFC를 보유해야 하고, 당해 과세연도 동안 최소 30일 이상 보유해야 함⁸⁸⁾.

- CFC 지분을 매각한 경우 CFC의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인식해야 함.
 - CFC 세제하에서 미국 주주는 배당소득을 세무상 유리한 자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임⁸⁹⁾.
 - 이 때, 특정소득이란 미국 주주가 CFC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축적된 CFC의 소득으로서 이미 Subpart F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함⁹⁰⁾.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은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⁹¹⁾와 실제 배당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⁹²⁾를 모두 인정함.

85) IRC §951(a)(1)

86) Larkins, 앞의 책, p.280

87) 예를 들어, 내국인 A가 CFC인 외국법인 P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외국법인 P도 CFC인 외국법인 R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R의 Subpart F 소득은 외국법인 P를 '넘어(hops)' A의 총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합산방식을 'Hopscotch Rule'이라 한다.

88) IRC §951(a)(1)

89) Larkins, 앞의 책, p. 283

90) IRC §1248(a)

91) IRC §960(a)

92) IRC §960(b)

2) 실제 배당금의 총소득 불산입

- CFC 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미 미국 주주의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CFC가 동일한 수입을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거나 실제 주주에게 배당될 때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⁹³⁾.

3) 주식 장부가 조정

- 간주배당금은 미국 주주의 주식 장부가(stock basis)를 증가시키는 반면, 추후에 과세된 부분을 배당받는 경우 주식 장부를 감소시킴⁹⁴⁾.
 - 따라서 미국 주주가 받는 기과세 부분의 배당금은 수입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으로 처리됨⁹⁵⁾.

2. 일본

가. 개관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도모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1978년 세제개정에서 신설된 것임.
 - 1992년 세법개정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무과세 또는 경과세국을 고시하는 방식이 폐지되고 외국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2005년에는 CFC 과세규정과 별도의 규정을 두어 내국법인의 특정외국신탁에 대해서도 CFC 세제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였으나, 두 제도의 실질이 동일한 측면을 반영해 2007년 법개정에 의해 CFC 과세규정으로 통합함.

93) IRC §959(a)

94) IRC §961(a), 961(b)(1)

95) Larkins, 앞의 책, p. 281

- 2010년 세법개정에서는 내국법인의 CFC 지분 보유비율(5% → 10%), 저세율국으로 보기 위한 세부담 비율(25% → 20%)이 변경되고, 부분과세대상금액 익금산입 제도가 창설됨.

나. 적용대상

1) 내국법인

- CFC 세제가 적용되는 ‘내국법인’은 CFC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내국법인을 의미함.
 - 이러한 요건은 CFC 과세제도의 취지상 경영방침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수주주는 조세회피의 위험이 높지 않은 측면을 고려한 것임.
 - 2010년 법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CFC 주식 보유비율 요건은 과거 5%에서 10%로 변경됨.
 - 2010년 법개정은 소수주주에 대해 CFC 세제의 적용에 따른 신고서류의 구비 등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과 2010년에 도입된 부분과세대상금액 익금산입제도에 따라 이러한 자료수집 사무부담도 고려할 필요성을 종합한 것임⁹⁶⁾.
 - ‘내국법인’은 ① 단독으로 10% 이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② 10% 이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동족주주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구분됨⁹⁷⁾.
 - 동족주주 그룹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 중 ① 하나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② 이들과 동족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동족관계의 예로서 거주자의 친족이나 사용인, 내국법인의 임원, 내국법인의 임원이 지배하는 법인⁹⁸⁾을 들 수 있음.

96) 일본 재무성, 『税制改正の内容 平成22年度』, pp. 493~494

97)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1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14조 제3항

98) ‘내국법인의 임원이 지배하는 법인’은 내국법인에 의한 지배력이 미치는 관점에서 내국법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2008년 세법개정에서 동족주주 그룹의 범위에 추가되었음

2) CFC(특정외국자회사 등)

- 일본 세법상 CFC는 50% 이상의 지배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CFC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세율국에 소재할 것을 요건으로 함.
 - 또한 외국법인이 CFC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각 사업연도 말 현황에 의해 판단하게 됨⁹⁹⁾.

- 50% 이상의 지배요건은 CFC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자기주식 제외)의 수나 금액 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수나 배당 기타 재산분배청구권에 기초해 받을 수 있는 잉여금의 배당액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함¹⁰⁰⁾.
 - 의결권의 수나 청구권에 기초한 잉여금의 배당액을 고려하는 것은 2007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의결권이나 청구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여 CFC 세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한 사례에 대응하는 것임¹⁰¹⁾.
 - － 예를 들어, 내국법인인 A법인과 외국법인인 B법인이 판정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인 C법인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2주)을 1주씩 보유하면서 A법인의 주식은 1,000개의 의결권이 있고 B법인의 주식은 1개의 의결권이 있는 경우임.
 - －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A법인이 C법인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수나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배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저세율국은 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인 것 또는 그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소득금액의 2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¹⁰²⁾.
 - CFC 판정에 관련된 외국자회사의 조세부담비율의 기준은 조세회피행위를 적절하게 방지하는 필요성과 기업의 사무부담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

99)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9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14, 제39조의 20 제1항

100)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1, 2항

101) 일본 재무성, 『税制改正の内容 平成19年度』, p. 579

102)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14조 제1항

가 있음.

- 최근 주변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세부담 비율 계산과 적용제외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작업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유지의 관점에서 일본 법인세 부담의 약 절반을 기준으로 대상국·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조세부담비율의 기준을 20%로 인하하게 된 것임.

3) 특정의국신탁

- 내국법인이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당해 외국신탁의 수탁자는 당해 외국신탁의 신탁자산 및 고유자산에 대해 각각 별도의 주체로 간주되어 CFC 세제를 동일하게 적용함¹⁰³⁾.
 - 외국신탁의 수탁자에 대해 CFC 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2000년부터 특정신탁에 대해 법인세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때문임¹⁰⁴⁾.
 - 신탁의 수탁법인은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구분됨¹⁰⁵⁾.
 - 이에 따라 외국 영업소에 신탁된 사모투자신탁과 유사한 형태에도 CFC 세제가 적용되도록 2005년에 특정신탁도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대상에 포함됨.
 - 기존에도 사모투자신탁에 대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시기를 지연하고 개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계산기간에 과세하고 있었음.
 - 그러나 외국 영업소에 신탁된 경우에는 사모투자신탁도 계산기간에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분배시까지 과세가 지연되므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에 대한 CFC 규정을 도입함¹⁰⁶⁾.

103)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8항

104)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010, p. 457

105) 법인세법 제4의7조 제1, 2호

106) 일본 재무성, 『税制改正の内容 平成17年度』, pp. 303~304

다. 과세소득

- 일본의 CFC 세제상 과세소득의 범위는 지역적 접근방식에 의하므로 저세율국에 소재한 CFC의 전체 소득을 기본대상으로 하면서 이 중 적용제외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함.

1) 적용제외소득

- 해외투자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적용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CFC 세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는 CFC 과세제도는 자국의 과세권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면서도 정상적인 해외투자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임.
 - 적용제외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기준, 실체기준, 관리지배기준, 비관련자 기준 또는 소재지국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기준'은 당해 외국법인이 주식이나 채권의 보유,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의 제공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대여 중 하나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함.
 - 주식 등의 보유업은 그 성격상 자국에서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행해야 할 만한 적극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발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권 형성을 배경으로 해당 지역에 해외거점회사(총괄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 따라서 2010년 법개정에서 피총괄회사¹⁰⁷⁾의 주식에 대한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총괄회사의 경우 사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도입함¹⁰⁸⁾.

- '실체기준'은 본점 소재지국에 대해서 주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무소,

107) 피총괄회사란 일정한 외국법인 중 CFC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의결권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인면서 본점 소재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함(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17조)

108)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3항

점포, 공장 기타 고정시설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서류상 회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물리적 시설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임.

□ ‘관리지배기준’은 본점 소재지국에 대해서 사업의 관리, 지배 및 운영을 스스로 수행할 것을 의미함.

- 이 요건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임원으로서 직무집행,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등이 행해지는 장소와 함께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판정함¹⁰⁹⁾.

□ ‘비관련자 기준’은 도매업, 은행업, 신탁업, 금융상품거래업, 보험업, 해운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주로 하여 CFC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한편, 2010년 법개정에 따라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총괄회사에 대해서는 피총괄회사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 지역경제권을 개발하는 그룹 기업이 물류총괄회사를 활용해 그룹의 수익향상에 기여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이러한 물류총괄회사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임.

□ ‘소재지국 기준’은 비관련자기준이 적용되는 7가지 업종 이외의 사업을 주로 하여 CFC의 본점 소재지국에 대해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 이러한 사업에는 부동산업, 물품임대업이 해당함¹¹⁰⁾.

2) 과세대상금액의 익금산입

□ CFC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CFC 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액(과세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적용대상금액에 지분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109) 本庄 資, 『國際租稅法』,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2005, p. 376

110)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17조 제12항

함¹¹¹⁾.

- 적용대상금액 = 일본세법에 근거하여 CFC의 과세대상연도의 결산이익액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7년 내에 발생한 결손금액 - 과세대상연도에 납부하는 법인소득세액(환급액을 공제함) - 25% 이상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 등의 액
- 과세대상금액 = 적용대상금액 × 내국법인의 직·간접적인 청구권 감안 주식보유비율

자료: 渡邊淑夫, 『法人税法』, 2010, p. 704

3) 부분과세대상금액 익금산입제도

- 2010년 법개정에서는 적용제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저세율국의 수동적 소득에 대해 부분과세대상금액 익금산입제도가 창설됨¹¹²⁾.
 - 주식이나 증권의 운용에 의한 소득 등의 자산운용적인 소득은 일본보다 비교적 세부담이 낮은 외국자회사에 대해 거래하는 때 적극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¹¹³⁾.
 - 따라서 자산운용적인 소득을 외국자회사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보다 확실히 방지하는 관점에서 외국자회사의 자산운용적인 행위에 관련된 일정한 소득금액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는 과세체계가 신설된 것임.

-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동적 소득에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의 성격을 가진 7가지의 유형이 포함됨¹¹⁴⁾.
 - 다만, 1~5의 금액은 CFC가 행하는 특정사업 이외에 사업의 성질상 중요하고 불가피한 업무에서 발생한 경우 익금산입되지 않음.
 - 은행 등의 기관투자가가 자금운용의 일환으로서 투자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이에 해당함.

111)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6 제1항,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9조의15, 제39조의16 제1~3항

112)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6 제4항

113) 일본 재무성, 『税制改正の内容 平成22年度』, p. 496

114)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6 제4항

1. CFC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러한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
2. 채권 이자
3. 채권 상환금액과 채권취득비용 간의 차액
4. CFC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10% 미만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상품거래를 통한 주식양도차익
5. 금융상품거래를 통한 채권양도차익
6. CFC 소재국에서 출원되지 않은 특허권, 산업재산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로열티
7. 선박이나 항공기의 대여소득

- 동 제도에 따라 합산되는 금액(부분과세대상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7가지의 소득의 합계액(부분적용대상금액)에 내국법인의 CFC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부분적용대상금액은 7가지의 유형의 소득 금액에서 각각 직접 비용을 제외한 잔액의 합계액을 말함.

- 일본 CFC 세제에서는 부분적용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최소기준(De minimis rules)이 적용됨.
- 각 사업연도의 부분적용대상금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또는 각 사업연도 결산에 기초한 소득금액 중 부분적용대상금액의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부분과세대상금액의 익금산입제도를 적용하지 않음¹¹⁵⁾.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소득합산시 이중과세방지규정

- CFC 소득에 대해 과세된 외국법인세액 중 과세대상금액 또는 부분과세대상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내국법인이 납부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해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¹¹⁶⁾.

115)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5항

2) 실제 배당시 이중과세방지규정

가) 수취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과세대상금액 또는 부분과세대상금액이 합산과세된 후 CFC가 실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수취배당액은 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음¹¹⁷⁾.
 - 이렇게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연도 및 그 전 10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해당 내국법인에 대해 익금산입된 과세대상금액 및 부분과세대상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따라서 수취배당액이 기존 10년 내 합산과세소득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됨.
 - 이러한 조세특별조치법 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직접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외국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CFC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¹¹⁸⁾.
 - CFC가 직접 지분비율이 25% 이상의 외국자회사인 경우에는 기존 10년 내 합산과세대상이 된 특정과세대상금액으로부터 배당이 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특정자회사로부터 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임.

- 2010년 세법개정에 의하면 수취배당의 원천이 이미 일본에서 과세된 손자회사의 소득인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됨¹¹⁹⁾.
 - 해외손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경유해 내국법인에 지급된 잉여금의 배당 중 합산액을 원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임¹²⁰⁾.

116)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7 제1항

117)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8 제1항

118) 渡邊淑夫, 『法人税法』, 中央經濟社, 2010, p. 704

119)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8조

120) 일본 재무성, 『税制改正の内容 平成22年度』, p. 499

나) 수취배당에 관련된 외국 원천세 등의 손금불산입 등

- 수취배당액에 관련된 외국 원천세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은 CFC의 유형과 수취배당액의 원천에 따라 손금산입 또는 외국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됨.
 - CFC가 직접 보유비율이 25% 이상의 외국자회사인 경우에는 수취배당액의 원천이 기존 10년 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된 금액이라면 해당 외국원천세를 손금산입함¹²¹⁾.
 - 법인세법 규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직접 보유비율이 25% 이상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잉여금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수취배당 등의 액이 익금불산입되는 반면, 그 수취배당 등에 관련된 외국원천세 등의 액에 대해서는 손금액에 산입되지 않음¹²²⁾.
 - 따라서 CFC로부터 수취한 배당액이 10년 내 합산과세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수취배당에 관련된 외국원천세액은 손금불산입됨.
 - 다만, 이 경우 외국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CFC 이외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배당 등에 관련된 외국원천세액등과 동일함.
 - 반면 잉여금의 배당을 한 CFC가 직접 보유비율이 25% 이상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취배당 등의 액에 관련된 외국원천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없어서 손금이 되지만, 익금불산입분에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세액공제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함¹²³⁾.

121)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8조 제2항, 법인세법 제39조의 2

122) 법인세법 제23조의2, 제39조의2,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2조의3 제7항 제3호

123)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2조의3 제8항

〈표 Ⅲ-2〉 실제 배당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CFC의 유형	수취배당 등		외국원천세 등	
	① 10년 내 합산과세소득부분	② 기타부분	①에 관련된 금액	②에 관련된 금액
직접 25% 이상 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3의2조)		손금산입 (조특법 제66의8조 제2항)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39의2조)
			외국세액공제 불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의3조 제7항 제3호)	
그 밖의 경우	익금불산입 (조특법 제66의8조 제1항)	익금산입	손금산입	
			외국세액공제 불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의3조 제8항 제1호)	외국세액 공제 적용

자료: 渡邊淑夫, 『法人税法』, 2010, p. 706

3. 호주

가. 개관

- 호주의 피지배외국회사 세제(이하 'CFC 세제')는 1990년에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이 유보되어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조세가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됨.
 - 이후 1993년에는 거주자인 투자자가 외국법인 등에 투자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외투자펀드제도를 도입하였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1987년에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도입하였음.
- 호주에서 거주하지 않는 실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호주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제도에는 CFC 세제, 양도신탁 세제(transferor trust regime) 및 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FIF regime)가 있음.

- CFC 세제 : ITAA 36의 Part X에서 규정됨.
- 양도신탁 세제 : ITAA 36의 Part III, Div 6AAA에서 규정됨.
 - 양도신탁 세제: 호주 거주자가 적정한 대가 없이 자산을 외국재량신탁(foreign discretionary trust)인 양도신탁에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신탁의 소득을 양도자에게 귀속시킴.
- FIF 세제 : ITAA 36의 Part XI에서 규정됨.

- 호주는 2010년에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종합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함.
 - 현재 CFC 규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1인이 지배하는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CFC 적용면제 규정 등임.
 - 이외에도 호주 밖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용료소득을 능동소득으로 보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FIF 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폐지하였으며, 새로운 규정은 FAF(foreign accumulation fund) 과세제도로 현재 개정중에 있음.

나. 적용대상

1) CFC¹²⁴⁾

- 외국회사가 CFC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외국회사는 호주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하고, ② 엄격통제요건(strict-control test), 의제통제권요건(assumed controller test) 및 실질요건(de facto test)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엄격통제요건 : 5인 이하의 ‘호주 1% 실체’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외국회사 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하거나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호주 1% 실체 :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실체(entity)
 - 의제통제권요건 : 하나의 호주 실체(entity)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직접적·간접

124) §340 ITTA 1936

적으로 외국회사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호주 실체 : 호주의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회사)을 포함함.

○ 실질요건 : 5인 이하의 호주 실체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를 효과적으로 지배하여야 함.

□ 외국회사의 통제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자는 호주 실체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각각 다름.

○ 호주 실체가 개인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 파트너십, 신탁관리자(trustee), 회사 등이 특수관계자가 됨.

– 친족 : 특수관계자는 개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3촌·4촌 친족, 입양아 등.

– 파트너십 : 호주 실체(개인)가 파트너인 파트너십의 파트너 및 그 파트너의 배우자와 자녀.

– 신탁관리자 : 호주 실체(개인)와 그 특수관계자가 신탁의 이익(beneficiary)를 받는 경우 그 신탁관리자

– 회사 : 호주 실체(개인)와 그 특수관계자가 유효한 영향력¹²⁵⁾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또는 대부분(majority)의 의결권이 호주 실체(개인)와 그 특수관계자에 의해서 보유되는 회사

○ 호주 실체가 법인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 신탁관리자(trustee), 회사의 지배권을 갖는 실체 등이 특수관계자가 됨.

– 파트너 : 호주 실체(법인)가 파트너인 파트너십의 파트너 및 그 파트너의 배우자와 자녀.

– 신탁관리자 : 호주 실체(법인)와 그 특수관계자가 신탁의 이익(beneficiary)을 받는 경우의 그 신탁의 신탁관리자.

– 회사의 통제권을 갖는 실체(entity) : 그 실체가 회사에 유효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통제권을 갖는 실체, 또는 대부분의 의결권이 호주 실체(법인)와 특수

125)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회사나 이사가 다른 회사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데 익숙한 경우

관계자에 의해서 보유되는 회사

- 외국회사의 통제권 계산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합산되어야 함.
 -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의 계산은 단계적으로 취득한 지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예를 들어, 거주자가 A회사 지분을 100% 취득하고 A회사가 다시 B회사 지분을 30% 취득할 경우 거주자가 간접적으로 취득한 B회사의 지분율은 $100\% \times 0.3 = 30\%$ 임.
 -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분율은 피지배외국회사 등을 통해서만 추적될 수 있음.
 - 피지배외국회사 등은 CFC, 피지배외국파트너십, 및 피지배외국신탁을 포함함.
 - 피지배외국파트너십 : 하나 이상의 CFC나 피지배외국신탁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파트너십
 - 피지배외국신탁 : 호주의 신탁이 아닌 것으로, ① 적격한 양도자(transferor)를 가지고 있으며, ② 5인 이하의 거주자 및 특수관계자가 신탁재산(capital of trust)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신탁
 - 100% 의제규정¹²⁶⁾ : 단계적으로 지배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의 경우 지분율 100%로 아래 단계의 실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정한 상황은 아래와 같음.
 -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외국회사와 관련하여 의제통제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외국회사를 실제로 통제하는 경우
 - 호주 파트너십이 아닌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 신탁과 관련하여 적격한 양도자가 아닌 경우
 - 호주 신탁이 아닌 신탁에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 예를 들어, 한 내국회사가 외국회사 FC1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외국회사 FC1은 외국회사 FC2의 주식을 35% 보유하며, 다시 외국회사 FC2는 외국회사 FC3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다른 거주자가 FC2의 주식을 20% 보유하는 경우 : FC3에 대

126) §353-355 ITTA 1936

한 간접지분율은 $100\% \times 0.35 \times 100\% = 35\%$ 임.

– FC1, FC3은 지분율이 60%로 50%를 초과하여 ‘100% 의제규정’이 적용됨.

2) 소득귀속자¹²⁷⁾

□ CFC 발생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할 소득귀속자(attributable taxpayer)는 호주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 중 특정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임.

○ 특정요건은 ① 호주 거주자가 CFC에 10% 이상의 직접적·간접적 지분을 투자하거나, ② 호주 거주자가 5인 이하의 호주 실체(entity)로 구성된 그룹의 일부로서, ‘호주 1% 실체’이어야 하고, 동시에 실질요건을 충족하여 CFC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임.

□ 소득귀속자가 CFC로부터 귀속받을 CFC 소득은 CFC 귀속소득(attributable income)에서 귀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 귀속지분율의 계산에는 직접귀속지분율(direct attribution interest)과 간접귀속지분율(indirect attribution interest)을 모두 고려함.

– 직접귀속지분율은 다음 중 가장 큰 비율로 함.¹²⁸⁾

- ① CFC 총납입자본금 중 소득귀속자가 보유하는 지분
- ② 자본·이익의 배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중 소득귀속자가 보유하는 권리
- ③ 청산 시 CFC의 자본·이익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소득귀속자가 보유하는 권리
- ④ 청산을 제외한 상황에서 CFC의 자본·이익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소득귀속자가 보유하는 권리

– 간접귀속지분율은 단계적으로 취득한 지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¹²⁹⁾

127) §361(1) ITTA 1936

128) §356 ITTA 1936

129) §357 ITTA 1936

- 다만, 귀속지분율에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고려하지 않음.
- CFC의 귀속지분율은 CFC에 직접투자한 지분에 대한 비율임.
 - 다만, 귀속지분율 계산 시에는 앞서 언급한 ‘100%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피지배외국파트너십의 경우, 귀속지분율은 파트너십의 자산이나 이익을 귀속 받는 비율 중 큰 것으로 함.
 - 피지배외국신탁의 경우, 귀속지분율은 신탁의 자산이나 이익을 귀속받는 비율 중 큰 것으로 함.

3) 외국파트너십

- ITAA 1936 Division 5A에 따르면, 외국의 세법에 의할 경우 도관체(look-through entity)인 외국실체는 호주에서 법인(company)로 처리됨.¹³⁰⁾
 - 따라서 외국에서 도관체로 보는 외국실체(foreign entity)는 CFC가 될 수 있음.
 - 다만,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없고 파트너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액만 있으므로 호주에서 CFC로 보는 외국파트너십의 경우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ITAA 1997 Division 830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foreign tax)에 관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특정 외국혼성체(foreign hybrid)를 법인(company)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십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CFC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특정 외국혼성체는 특정 LP¹³¹⁾, LLP 등이 해당됨.

130) Anton Joseph,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and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Australia, IBFD, 2005.05/06.

131) §830.10(1) ITTA 1997에 따르면, 특정 LP : 외국에서 설립되었고, 외국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파트너에게 부과되었고, 그 외국에서 과세기간 동안 거주자가 아니어야 하고, 다른 납세자와 관련하여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그 LP가 CFC이어야 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LP임.

다. 과세소득

1) 능동소득요건(Active Income Test)

- 일반적으로 CFC가 능동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CFC의 소득은 귀속되지 않음.
 - 하지만 CFC의 일부 소득은 CFC의 능동소득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항상 CFC 귀속 소득이 될 수 있음.

- 능동소득요건¹³²⁾은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임.
 - ①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존재하여야 함.
 - ② 회사는 회계연도 기간중 항상 지정국가(LC) 또는 비지정국가(ULC)에 거주하여야 함.
 - 지정국가(Listed country)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UK, US
 - 비지정국가(Unlisted country) : 지정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 ③ 회사는 적정한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④ 회사는 특정한 설립관련 증거(substantiation requirement)를 보유하여야 함.
 - ⑤ 회사는 거주하는 국가의 고정사업장(PE)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⑥ 회사의 부정수입률(tainted income ratio)¹³³⁾이 5%에 미달하여야 함.
 - 부정수입(tainted income) : 수동수입 및 CFC의 거래가 사실상 국내거래인 경우의 수입
 - ⑦ 1995년 6월 30일 이후에는 능동소득요건을 위한 계산은 공정가치(arm's length price)로 계산되어야 함.

- 부정수입률은 총수입액에 대한 총부정수입액의 비율로 계산됨.
 - 총수입액은 총수입액과 총자본이득으로 구성됨.¹³⁴⁾
 - 총부정수입액은 수동수입(passive income), 부정판매수입(tainted sales income),

132) §432 ITTA 1936

133) 부정수입률 = 총부정수입액/총수입액

134) §434 ITTA 1936

및 부정용역수입(tainted service income)으로 구성됨.¹³⁵⁾

- 수동수입은 투자수입, 연금수입, 임대수입 등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 ITAA 1936의 sec. 446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ITAA 1936의 sec. 446 상 수동소득은 다음과 같음.
 - 배당소득, 부정이자소득, 연금소득, 부정임대소득, 부정사용료소득, 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 부정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

- 부정판매소득은 주로 CFC의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임.
 - 다만, CFC의 특수관계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
 - ITAA 1936의 sec. 447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부정용역소득은 주로 CFC의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임.
 - 다만, CFC의 특수관계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
 - ITAA 1936의 sec. 448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부정용역소득에는 사용료소득(royalty), 토지의 임대관련 소득, 또는 부정자산(tainted asset)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2) 귀속소득(attributable income) 구성요소

- CFC 귀속소득은 CFC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귀속자의 귀속지분율과 곱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임.
 - 다만, 귀속소득은 CFC의 거주지와 능동소득요건(AI test)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짐.

135) §446-448 ITTA 1936

- CFC 귀속소득의 종류에는 ① 무조건귀속소득(UAI), ② 조정부정소득(ATI), ③ 특정양허소득(EDCI), 및 ④ 저율과세 제3국 소득이 있음.
 - 다만, CFC의 거주지와 능동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귀속소득의 구성이 달라짐.
 - 무조건귀속소득(UAI, Unconditional Attributable Income) : CFC로 인정되고 1인 이상의 소득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귀속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임.
 - 조정부정소득 : 수동소득, 부정판매소득, 및 부정용역소득으로 구성됨.
 - 특정양허소득(EDCI, Eligible Designated Concession Income) : 국가 간에 특정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았거나 저율과세하기로 합의한 소득
 - 저율과세 제3국 소득 :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저율로 과세된 소득

- 무조건귀속소득(UAI)은 외국회사가 CFC로 인정되고 1인 이상의 소득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귀속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FIF 소득, 신탁소득 등으로 구성됨.
 - FIF 소득 : CFC가 호주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CFC에 귀속되는 FIF 소득
 - 신탁이익 : CFC가 호주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CFC에 귀속되는 신탁의 이익
 - 양도신탁이익 : CFC가 호주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CFC에 귀속되는 양도신탁의 이익

- 조정부정소득은 수동소득, 부정판매소득, 부정용역소득으로 구성됨.

- 수동소득은 투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 ITAA 1936의 sec. 446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ITAA 1936의 sec. 446에서 규정한 수동소득은 다음과 같음.
 - 배당소득, 부정이자소득, 연금소득, 부정임대소득, 부정사용료소득, 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 부정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

- 부정판매소득은 주로 CFC의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임.
 - 다만, CFC의 특수관계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
 - ITAA 1936의 sec. 447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부정용역소득은 주로 CFC의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임.
 - 다만, CFC의 특수관계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
 - ITAA 1936의 sec. 448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부정용역소득에는 사용료소득(royalty), 토지의 임대관련 소득, 또는 부정자산(tainted asset)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특정양허소득(EDCI)은 양국이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과세하기로 합의한 소득임.
 - 일반적으로 지정국가에 거주하는 CFC의 소득은 호주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지만 지정국가라 하더라도 특정조세양허(designated tax concession)가 체결되어 상대적으로 과세가 적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국가에 거주하는 CFC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소득에 포함됨.
 - Income Tax Regulation 152B의 sch. 9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지정국가, 실체(entity), 소득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특정양허소득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법률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로 캐나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실체(entity)에 대해서는 수동적 소득과 부정용역소득 중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특정양허소득임.

3) CFC가 지정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귀속소득

- CFC가 지정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귀속소득은 능동소득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그 구성이 달라짐.

가) 능동소득요건 충족 시

- CFC가 지정국가에 거주하며, 능동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과세소득은 무조건귀속 소득(UAI)으로 구성됨.¹³⁶⁾
 - FIF 소득 : 직 · 간접적으로 CFC에서 발생한 FIF 소득
 -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 · 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지정국가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특정양허 소득으로 과세되는 신탁의 이익
 - CFC가 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¹³⁷⁾ : 지정국가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특정 양허소득으로 과세되는 신탁의 이익이며, CFC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양도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 · 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지정국가에 거주하는 CFC의 경우, 특정양허소득(EDCI)이 아니면서 지정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¹³⁸⁾
 - 저율과세 제3국 소득

나) 능동소득요건 불충족 시

- CFC가 지정국가에 거주하며, 능동소득요건을 불충족할 경우의 과세소득은 무조건귀속 소득(UAI)와 특정양허소득(EDCI)로 구성됨.¹³⁹⁾

136)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09-2010, ATO, 2011.
www.ato.gov.au/content/00237832.htm

137) §385(2) ITTA 1997

138) §385(2) ITTA 1997

- FIF 소득 : 직·간접적으로 CFC에서 발생한 FIF 소득
 -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지정국가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특정양허 소득으로 과세되는 신탁의 이익
 - CFC가 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¹⁴⁰⁾ : 지정국가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특정 양허소득으로 과세되는 신탁의 이익이며, CFC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양도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의 자격으로 봄.
- 특정양허소득 : 수정부정소득인 특정양허소득
 - §317 ITTA 1936과 Income Tax Regulation 152B의 sch. 9에서 제시된 소득
- 저율과세 제3국 소득

4) CFC가 비지정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귀속소득

가) 능동소득요건 충족 시

- CFC가 비지정국가에 거주하며, 능동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과세소득은 무조건귀속소득(UAI)으로 구성됨.¹⁴¹⁾
 - FIF 소득 : 직접적·간접적으로 CFC에서 발생한 FIF 소득
 -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139)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09-2010, ATO, 2011, www.ato.gov.au/content/00237832.htm

140) §385(2) ITTA 1997

141)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09-2010, ATO, 2011, www.ato.gov.au/content/00237832.htm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양도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나) 능동소득요건 불충족 시

- CFC가 비지정국가에 거주하며, 능동소득요건을 불충족할 경우의 과세소득은 조정부정소득(ATT), 무조건귀속소득(UAI)으로 구성됨.¹⁴²⁾
 - FIF 소득 : 직·간접적으로 CFC에서 발생한 FIF 소득
 -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양도신탁의 이익 : CFC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얻는 신탁의 이익
 -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 CFC는 호주의 거주자로 보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으로 봄.
 - 조정부정소득 : ① CFC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조정부정소득과 ② CFC에 간접적으로 발생한 조정부정소득
 - 간접적으로 발생한 조정부정소득의 경우, CFC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파트너십의 파트너의 자격으로 봄.

142)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09-2010, ATO, 2011.
www.ato.gov.au/content/00237832.htm

5) 과세소득 계산

- 소득귀속자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CFC로부터의 귀속소득은 CFC 귀속소득을 소득귀속자의 귀속지분율로 곱하여 계산함.¹⁴³⁾

- CFC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CFC가 호주 거주자라고 가정하여 호주의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소득을 계산함.
 - 다만,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 일부사항을 조정함.
 - 과세소득계산 시 조정할 사항은 외화환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득과 비용은 호주화폐 단위로 환산되어야 함.¹⁴⁴⁾
 - 귀속소득은 호주나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호주와 외국에 납부한 세급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¹⁴⁵⁾
 - 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되어야 함.¹⁴⁶⁾
 - 귀속소득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는 1년 이상 보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함.¹⁴⁷⁾ 등

- 과세기간 (notional accounting period) : 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나, 국세청장에 의해 특정될 수도 있음.¹⁴⁸⁾

6) 과세소득 최소기준

- CFC가 거주하는 국가가 지정국가인 경우, 과세소득이 총소득의 5% 또는 5만 AUD

143) §456(1) ITTA 1936

144) §391 ITTA 1936

145) §392, §393 ITTA 1936

146) §397 ITTA 1936

147) §398 ITTA 1936

148) §319 ITTA 1936

미달할 때에는 그 과세소득은 귀속되지 않음.

○ 다만, 비지정국가는 이러한 최소규정이 없음.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배당 시 기과세소득 제외

당기이익을 원천으로 CFC가 지급한 배당금이 CFC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 배당금은 귀속소득에 포함하지 않음.¹⁴⁹⁾

2) 외국납부세액공제

CFC제도에 의해서 기과세된 소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지급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¹⁵⁰⁾

3) CFC 주식양도 관련 자본이득

소득귀속자가 CFC 지분을 처분할 경우, CFC 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CFC가 보유한 (외국)사업자산의 비율만큼 감소시켜 자본이득 과세함.¹⁵¹⁾

○ 다만, 사업자산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감소시키지 않고,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100%를 감소시킴.

○ (외국)사업자산 비율은 시장가치법이나 장부가치법으로 계산됨.

○ 시장가치법에 따르면, 주식처분 시점에 CFC 총자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능동사업 자산의 시장가치 비율로 계산함.

149)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09-2010, ATO, 2011,
www.ato.gov.au/content/00237832.htm

150)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2005,07.

151) §768-505 ITTA 1936

- 장부가치법에 따르면, 주식처분 시점에 CFC 총자산의 평균장부가치에 대한 능동 사업자산의 평균장부가치 비율로 계산함.

4. 뉴질랜드

가. 개관

- 뉴질랜드는 역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에 CFC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음.¹⁵²⁾
 - 뉴질랜드는 1985년에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외투자 이후 이에 대한 배당금의 회수를 이연(deferral)시키는 방법으로 뉴질랜드 조세에 대한 회피가 증가하였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등에 대한 직접투자(지분율 10% 이상 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지분율 10% 미만 투자)에 대하여 각각 CFC 과세제도와 FIF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음.
- 최초 도입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으며, 2007년 개정에서는 능동소득요건을 추가하여 수동소득을 귀속시키도록 함.¹⁵³⁾

나. 적용대상

1) CFC

- 외국회사가 CFC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회사(company)이어야 하고, ② 외국에서 거주(resident)해야 하고, ③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배되어야 함.¹⁵⁴⁾

152) 홍범교·김태훈·마정화,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153) Anton Joseph, *Changens in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8.01/02.

- ① CFC는 회사(company)이어야 함.
 - 회사는 그 구성원과 법률적으로 분리된 실체임.
 - ② CFC는 외국에서 거주(resident)해야 함.
 - 즉, 뉴질랜드에서 설립(거주)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서 거주자로 처리되어서도 아니 됨.
 - 뉴질랜드에서 설립(incorporate)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i) 주사무소가 뉴질랜드에 있고, ii) 관리업무가 뉴질랜드에 이루어져야 하며, iii) 이사가 뉴질랜드에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임.
 - ③ CFC는 뉴질랜드 거주자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함.¹⁵⁵⁾
 -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i) 5인 이하의 뉴질랜드 거주자의 지배지분이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나, ii) 한 뉴질랜드 거주자가 4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어떤 비거주자도 이를 초과하는 지분율이 없는 경우나, iii) 5인 이하의 뉴질랜드 거주자가 주주의 의사결정권 행사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함.
 - 지배지분(control interest)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주의 의사결정권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순자산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함.
- CFC로 분류되기 위한 지배지분의 계산에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보유하는 직접적·간접적 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지배권은 전 회계기간에 걸쳐 보유되어야 함.
 - 거주자가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거주자와 거주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보유하는 비율로 계산됨.¹⁵⁶⁾
 - 주식 등: 주식, 의사결정 권한, 소득을 귀속받는 권리나 소득을 처분(application)할 수 있는 권리, 순자산을 배분받는 권리.

154) <http://www.ird.govt.nz/toii/cfc/what-cfc.html>

155) sec. EX1 ITA

156) §EX5-EX6 ITA

- CFC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능동소득요건(active income test)이 충족되지 않아야 하며, 호주 CFC요건(non-attributing australian CFC)이 충족되어야 함.

2) 소득귀속자

- CFC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CFC 소득귀속자는 그의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의 소득지분(income interest)을 10% 이상 보유한 뉴질랜드 거주자임.¹⁵⁷⁾
- 소득지분(income interest)은 직접소득지분과 간접소득지분으로 구성됨.¹⁵⁸⁾
 - 직접소득지분과 간접소득지분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방법 등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그 지분율을 계산함.
 - 지분율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CFC의 총주식수에 대한 소득귀속자의 주식수, ② CFC의 총의사결정권 중 소득귀속자의 의사결정권 비율, ③ CFC의 소득 배분 비율, ④ CFC의 순자산배분 비율

다. 과세소득

1) 능동소득요건(Active income test, Non-attributing active CFCs)

- CFC가 능동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CFC의 소득을 소득귀속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음.
- 능동소득요건 : 귀속소득(attributable income)이 총소득(total income)의 5%에 미달하여야 함.¹⁵⁹⁾
 - 귀속소득은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해서 측정됨.¹⁶⁰⁾

157) <http://www.ird.govt.nz/toii/fif/>

158) §EX8-EX9 ITA

159) §EX21D, EX21E ITA

160) §EX21C ITA

- 호주에서 인정되는 재무회계의 방법에는 뉴질랜드 GAAP, IFRS 등임.
- 이러한 측정소득은 ITA §EX21C(8)에서 요구하는 감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호주 CFC 요건(Non-attributing Australian CFC)

- 회계기간 중에 CFC는 호주의 거주자(resident)이고 호주와 다른 국가 간의 모든 조세 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처리되는 경우 CFC 귀속소득을 귀속시키지 않음.
 - 또한, CFC는 호주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인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서는 아니 됨.

3) 귀속소득(attributable income) 구성요소

- 소득귀속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귀속소득(attributable income)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과 개인적 용역소득임.
 - 개인적 용역소득 :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을 의미함.
 - 수동소득(Passive Income)¹⁶¹⁾은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사용료소득, 및 특정배당소득 등임.
- 개인적 용역소득은 CFC의 능동소득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귀속소득에 포함됨.¹⁶²⁾
 - 따라서 개인적 용역소득은 능동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계산에서도 제외됨.
 - 개인적 용역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
 - ①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뉴질랜드의 거주자이어야 함.
 - ② 개인적 용역은 CFC가 제공하는 생산물에 필수적인 지원(support)이 아님.
 - ③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그의 특수관계자, 및 CFC가 특수관계자가 아님.¹⁶³⁾

161) §CQ2(1)(h), CQ2(1)(i), DN2(1)(h), DN2(i) ITA

162) §EX20B(9) ITA

- ④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CFC의 총소득 중 최소 80%가 그 개인의 용역제공과 관련 있어야 함.
- ⑤ CFC는 NZD 75,000이나 개인적 용역에서 발생한 CFC소득의 25% 중 큰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을 사용함.

□ 수동소득(passive income)은 특정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특정통신소득 등으로 구성됨.

□ 배당소득의 경우, §CW9 ITA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다음의 FIF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의 배당소득은 귀속소득에 포함됨.

- ① §CW9 ITA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배당금은 ASX에 상장된 주식, 적정하게 배분되는 호주단위신탁(unit trust) 등으로 구성된 FIF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¹⁶⁴⁾
- ② 배당률이 확정된 외국의 지분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¹⁶⁵⁾
- ③ 지급하는 배당금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외국회사의 지분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¹⁶⁶⁾
- ④ 뉴질랜드 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소득세를 귀속시키지 않는(unimputed) 것임.¹⁶⁷⁾

□ 이자소득의 경우, CFC가 체결한 금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귀속소득에 포함됨.

○ 다만, 특정한 금융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귀속소득에서 제외됨.

○ 제외되는 이자소득에는

- ① CFC가 특수관계가 있는 CFC에게 대출하는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¹⁶⁸⁾, 또는

163) §YB3 ITA에 따르면, CFC의 지분을 갖는 법인이나 CFC의 지분 중 25%를 갖는 개인이 특수관계자임.

164) §EX20B(3)(a) ITA

165) §EX20B(3)(c) ITA

166) §EX20B(3)(c) ITA

167) §EX20B(3)(b) ITA

- ② 자산의 매매계약이나 단기외상구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¹⁶⁹⁾가 포함됨.
-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파생상품이 매매목적으로 보유되거나, CFC의 통상적인 사업에 투입되지 않거나, 귀속소득의 창출을 위한 헤지 목적으로 보유되는 경우 귀속소득에 포함됨.¹⁷⁰⁾
- 사용료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속소득에 포함됨.
- 다만, 귀속소득에서 제외되는 사용료소득이 있음.
- 이러한 제외소득에는 ① 제3자의 능동적 사용료소득, ② 관련 당사자의 능동적 사용료소득, ③ 동일 과세권의 능동적 사용료소득 및 ④ 뉴질랜드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소득이 있음.
- 제3자의 능동적 사용료소득 : CFC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키는 지적재산을 창출·개발하거나 지적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용료소득으로 그 사용료는 i) CFC와 관련 없는 자에 의해서 지급되고, ii) 뉴질랜드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며, iii) CFC가 이미 창출·개발하였거나 가치를 상승시킨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발생되어야 함.¹⁷¹⁾
- 관계된 당사자의 능동적 사용료소득 : CFC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키는 지적재산을 창출·개발하거나 지적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용료소득으로 그 사용료는 i) CFC와 관련 없는 자에 의해서 지급되고, ii) 뉴질랜드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며, iii) CFC가 이미 창출·개발하였거나 가치를 상승시킨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발생되며, iv) CFC와 특수관계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함.¹⁷²⁾
- 동일과세권의 능동적 사용료소득 : 사용료는 i) 특수관계 있는 CFC가 당해 CFC와 동일한 과세권에 속해 있고, ii) 특수관계 있는 CFC가 능동소득요건을

168) §EX20B(12)(a) ITA

169) §EX20(12)(b) ITA

170) §EX20(4)(b) ITA

171) §EX20B(5)(a) ITA

172) §EX20B(5)(b) ITA

충족한 상태에서, iii) 뉴질랜드와 관련 없는 지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소득임.¹⁷³⁾

- 뉴질랜드 거주자가 소유한 지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소득 : i)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CFC와 관련 있는 다른 CFC에 의하여 CFC에 지급한 사용료소득, ii)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소유한 지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소득, 및 iii) 뉴질랜드 거주자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CFC 사용을 승인한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소득.

□ 임대소득은 대부분 귀속소득에 포함됨.

- 임대소득에는 ① 개인자산의 임대, 재임대에 의한 소득, ② 무형자산 라이선스(licence)의 사용에 의한 소득, ③ 임차(hire)나 위탁(bailment)에 의한 소득이 포함됨.
- 다만, 임대소득 중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임대소득 등은 귀속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
 - 귀속소득에서 제외되는 임대소득은 ① 동일한 과세권에 속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리스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임대소득, ② 특수관계 있는 CFC가 능동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CFC와 특수관계 있는 CFC가 동일한 과세권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CFC로부터 수취한 임대소득, ③ 매입권부 리스(hire purchase) 계약에 의한 지급액 및 ④ 금융리스에 의한 지급액이 포함됨.¹⁷⁴⁾

□ 국외 통신자산(telecommunication asset)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뉴질랜드 안에서 물리적으로 수행된 통신서비스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귀속소득에 포함됨.¹⁷⁵⁾

- 통신자산에는 케이블, 인공위성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함.

173) §EX20B(5)(c) ITA

174) §EX20B(7) ITA

175) §EX20B(11) ITA

- 하지만, 통신장비에는 핸드폰이나 선박·항공기의 통신장비를 포함하지는 않음.¹⁷⁶⁾
 - 다만, 통신서비스가 뉴질랜드와 CFC가 거주하는 국가 간의 정보의 송출 등일 때는 네트워크 운용자가 CFC의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또한 서비스가 뉴질랜드에 물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CFC의 직원이나 자산을 사용하여 수행되지 않아야 함.
- 귀속소득에는 특정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및 임대소득을 제외한 특정 금융소득 등이 포함됨.
- 이에는 ① 일반보험업의 보험·재보험계약에 의한 보험프리미엄소득¹⁷⁷⁾, ② 생명보험계약(policy)로부터의 소득, ③ 주식매매를 매출계정(revenue)으로 분류하는 경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 ④ 스톡옵션을 매출계정으로 분류하는 경우 스톡옵션의 매매로 인한 소득, ⑤ 자산의 처분을 매출계정으로 분류하는 경우 자산처분으로 인한 소득 ⑥ 개인회사소득(personal company income)이 포함됨.

4) 과세소득 계산

- 소득귀속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과세소득은 CFC의 귀속소득에 소득귀속자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함.

5) 외화귀속소득 환산방법

- CFC는 뉴질랜드의 거주자로 보아 귀속소득을 외화로 환산함.
- 따라서 외화환산의 일반규정에 따라 외화귀속소득을 환산함.

176) §EX20B(3)(m) ITA

177) §EX20B(3)(f) ITA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배당시 과세소득 제외

- 배당금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 외국회사가 지급하는 국외 배당금은 과세에서 제외됨.¹⁷⁸⁾
 - 다만, ① 정률배당 지분의 배당금, ② 공제가능 지분의 배당금, 및 ③ ASX 상장사, 호주단위신탁, 특정벤처캐피탈 등에 투자한 FIF의 지분을 10% 미만 보유한 경우 그 지분으로부터 지급한 배당금은 과세에서 제외하지 않음.
 - 정률배당 지분의 경우, 확정된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지분으로 이를 대차거래로 봄.
 - 공제가능 지분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외국회사가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할 경우에 지급한 배당금을 공제할 수 있는 지분임.

- 개인이나 신탁관리자(trustee)가 수취한 국외원천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임.
 - 한편, 회사가 신탁의 신탁관리자로서 국외원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국외원천배당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됨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투자자의 귀속 과세소득 계산 시 세액공제에 포함시킴.

178) §CW9 ITA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적용대상

- 특정외국법인이 CFC가 되려면 ‘지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사대상국은 50% 이상의 지분보유를 공통 요소로 하면서 그 외에 실질적 지배력도 고려하는 입법례도 있음.
 - 미국과 일본은 50% 이상의 지분보유만을 지배요건으로 규정함.
 -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50% 이상 지분보유 이외에도 의제지배인요건과 실질요건을 규정함.
 - 내국인이 단독으로 40% 이상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제 지배인요건에 해당하여 해당 특정외국법인은 CFC로 인정됨.
 - 또한 지분보유에 상관없이 특정외국법인의 이사 임명권을 지배하는 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지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우리나라는 지배요건을 포함한 ‘특수관계’ 여부로 판단하여 조사대상국들 중에서 CFC로 보는 범위가 가장 넓은.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에 대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CFC 세제의 적용을 받는 점은 호주나 뉴질랜드와 유사함.
 - 반면,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에 대해 형식적 또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어도 제3자가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경우까지도 CFC 세제를 적용하고 있음.
- CFC 세제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여부는 CFC 지분율을 통해 결정되는데, 주요국은

주로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 우리나라는 CFC에 대한 20% 이상 지분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주요국보다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좁은 측면이 있음.
 - 호주는 CFC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는 자를 CFC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발행주식 수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반면, 주요국은 그 외에도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비율도 함께 계산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음.
 - 미국은 의결권 있는 모든 종류주식의 의결권 총수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일본과 호주는 출자금액뿐만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각종 잉여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기초로 판단함.

□ CFC 세제는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데, 내국인이 법인 형태가 아닌 외국 신탁 또는 파트너십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소득합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일본과 호주는 CFC 세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 신탁 또는 파트너십을 ‘법인’에 준하여 CFC 세제를 적용하도록 함.
 - 일본은 특정신탁을 법인세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에 포함하고 있음.
 - 호주도 도관체인 외국실체를 ‘법인’으로 간주하여 CFC 세제를 적용함.
- 우리나라, 미국, 뉴질랜드의 규정은 ‘법인’을 전제로 CFC 세제를 적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나 신탁과세규정만으로는 외국 신탁 또는 파트너십에 소득을 유보하는 유형에 대응할 수 없는 허점이 있음.
 - 반면, 미국은 파트너십 과세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CFC 세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표 IV-1〉 CFC 세제의 적용대상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지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② 제3자가 내국인과 CFC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③ 내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④ 제3자가 내국인과 CFC를 실질적으로 지배 	의결권 수 또는 주가가격의 50% 이상 보유	발행주식·출자지분의 총수 또는 총액의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엄격지배요건: 5개 이하의 '호주 1% 실체'들로 구성된 그룹이 50% 이상 보유 ② 호주 실체 단독으로 40% 이상 보유 ③ 5개 이하의 호주 실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실질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개 이하의 거주자가 50% 이상 보유 ② 거주자가 단독으로 40% 이상 보유 ③ 5개 이하의 거주자가 의결정권사를 지배
납세의 무 자 보유 요건	20% 이상 지분보유	10% 이상 지분보유	10% 이상 지분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 이상 지분보유 ② 실질요건에 따라 CFC로 인정되는 경우, CFC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면서 CFC를 지배하는 5개 이하 호주 실체들로 구성된 그룹의 일원인 경우 	10% 이상 지분보유
CFC 의 형태	법인	법인	법인, 일부 신탁	법인, 도관체	법인

나. 과세소득

□ CFC 세제에서 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CFC 소득의 유형은 주된 접근방식에 따라 다르게 규정됨.

○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거래적 접근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되는 CFC 소득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CFC 세제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유형화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실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저세율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국에 소재하는 CFC의 전체 소득을 기본적으로 합산대상으로 보는 구조를 가짐.
 - 다만, 실제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CFC의 소재지국에 따른 불공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제외소득 규정을 둬
 - 거래적 접근방법이나 실제적 접근방법 모두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을 구분하기 위한 소득유형 또는 적용제외소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는 특징이 있음.
- CFC의 소득에 대해 소득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기준과 관련하여 조사국가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일부 범위에 대해서만 최소기준을 적용함.
- 우리나라는 CFC의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이면 소득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적 접근방식을 주로 하는 일본은 일반적으로 최소기준을 두지 않음.
 - 일본은 부분과세대상금액 익금산입제도에 대해서만 최소기준을 두고 있음.
 - 미국은 외국기지회사 소득과 보험소득에 대해서만 최소기준을 규정함.
 - 호주는 CFC가 지정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최소기준을 두며, 뉴질랜드는 최소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표 IV-2〉 CFC 세제의 과세소득 결정방식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주된 접근 방식	지역적 접근방법	거래적 접근방법	지역적 접근방법	거래적 접근방법	거래적 접근방법
저세율국	세부담률 15% 이하	해당없음	세부담률 20% 이하	해당없음	해당없음
과세 소득 또는 적용 제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용 제외 소득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준 ⓑ 실체기준 ⓒ 관리지배 기준 ⓓ 비관련자 기준 또는 소재지 기준 ②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적용제외 (§18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ubpart F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보험소득 ⓑ 외국기지 회사 소득 ⓒ 보이콧 관련 소득 ⓓ 불법 뇌물 소득 ⓔ 요주의 국가 소득 ②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용제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준 ⓑ 실체기준 ⓒ 관리지배 기준 ⓓ 비관련자 기준 또는 소재지 기준 ② 부분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원칙: 능동소득요건 불충족시 tainted income 합산 ② 예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국 예외 ⓑ 신탁소득 예외 ⓒ FIF소득 예외 ⓓ 비교세액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원칙: 능동 소득요건 불충족시 tainted income 합산 ② 예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CFC 요건 ⓑ 개인적 용역소득
최소 기준	CFC의 실제발생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기지회사 소득 또는 보험 소득: 1백만 달러 미만 또는 CFC 총소득의 5% 미만 ② 다른 유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적인 경우: 없음 ② 부분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1천만엔 이하 또는 5% 이하인 경우 부분과세대상금액 익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FC 소재국이 ① 지정국가: 총소득의 5% 또는 5만 AUD ② 비지정국가: 없음 	없음

다. 이중과세 방지장치

- CFC의 소득이 내국인의 과세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CFC 소재지국에 납부한 법인세 부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사국들이 모두 적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가 CFC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자본이득 과세와 관련하여 대부분 CFC 세제의 소득합산부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함.
 -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미 과세된 소득합산 금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며, 호주는 CFC가 보유하는 사업자산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그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의 이중과세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조정됨.
 - 뉴질랜드는 자본이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자본이득 과세기 조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음¹⁷⁹⁾.

- CFC 세제에 따라 내국인에 대해 소득합산이 적용된 후 해당 소득이 실제 배당되는 경우 내국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공통적임.
 - 이 때, 내국인의 거주지국에서 거주지국 과세방식을 취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가 조정되고 있음.

〈표 IV-3〉 CFC 세제와 관련된 이중과세방지장치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소득합산시 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CFC 지분 처분시 조정	해당부분을 이월익금 처리 또는 양도소득 불포함	지분의 취득원가 조정	조정없음	사업자산의 비율만큼 주식 양도차익을 차감	조정없음
소득합산 금액의 배당	과세소득 불포함	과세소득 불포함	과세소득 불포함	과세소득 불포함	과세소득 불포함

179) Deloitt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Essentials, 2011, p. 28
 (http://www.deloitte.com/assets/Dcom-Global/Local%20Assets/Documents/Tax/Intl%20Tax%20and%20Business%20Guides/matrix/dtt_tax_cfc_regimes_essentials.pdf, 2011, 2, 25 접속)

2. 시사점

가. 역외투자펀드(FIF) 과세제도의 보완적 사용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조사 대상 국가에서는 해외원천소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세회피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즉,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배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CFC 과세제도로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지배하지 않는 외국회사의 경우 FIF 과세제도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CFC에 투자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
 - 따라서 내국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특정외국법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실체(foreign entity)에 투자하는 자 및 저세율 국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법인에 투자하는 자 등이 조세회피를 할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해외원천소득의 조세회피를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CFC 과세제도에 적용받지 않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역외투자펀드(FIF) 과세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는 ① 지배력 없는 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으며, ② 외국실체(foreign entity)가 회사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아닌 외국 실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도 있음.
 - 다만,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는 과세근거의 수집 및 합리적인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결정 등이 필수적임.

나. 외국 도관체(foreign look-through entity)의 CFC 인정

- 도관체의 법적 실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CFC 과세제도에 대상이 되는 외국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이로 인해서 외국 도관체에 투자한 거주자의 경우, 도관체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도관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CFC 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외국회사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CFC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반면 호주의 경우 외국 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CFC 과세제도를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 특정 외국 신탁을 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아 CFC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이는 외국 도관체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도관체에 대한 투자로 발생된 소득을 해외원천소득의 조세회피 방지제도에 편입시킨 것으로 사료됨.

다. CFC 적용대상 납세자 범위의 확대

- CFC 적용대상 내국인은 CFC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임.
 - 다만, 지배력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함.
 - 우리나라의 경우 CFC에 투자한 직접적·간접적 지분이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데 반해, 미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직접적·간접적 지분이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CFC 적용대상 내국인의 범위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좁음.
 - 또한 내국인의 범위에서 누락되는 20% 미만의 외국법인 투자자의 경우 역외투자

펀드(FIF) 과세제도도 적용하지 않음.

- 즉, 미국, 호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음.

라. 내국인 지분율 결정방법 다양화

- 우리나라의 경우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됨.
 - 다만,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함.
 -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대한 입증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배 여부 확인을 위한 다양한 계산방법이 필요함.

- 이에 비해, 호주의 경우 지분율의 결정에는 단순히 발행주식이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지분율 중 가장 큰 것으로 결정함.
 - 호주의 지분율은 ① 총납입자본금 중 내국인의 납입자본금 비율, ② 다양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 ③ 청산 시 자본·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의 비율, ④ 청산을 제외한 상황에서 자본·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의 비율 중 가장 큰 것을 지분율로 계산함.

참고문헌

-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텍스, 2010.
- 서영준·권순창,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9.
- 심종석,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6집, 국제회계학회, 2009.
- 이전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제7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 최영렬, 「한국의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유보소득 과세제도 연구」, 『조세법연구』 [XIII-2], 2007.
- 홍범교·김태훈·마정화,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010.
- 本庄 資, 『國際租税法』,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2005.
- 渡邊淑夫, 『法人税法』, 中央經濟社, 2010.
- Anton Joseph,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and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Australia*, IBFD, 2005.05/06.
- _____, *Changens in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8.01/02.
- ATO,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09-2010*, ATO, 2011.
-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2004.
-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2005.07.

Renata Fontana, "*The Uncertain Future of CFC Regim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Part I*", IBFD European Taxation, June 2006.

<http://online2.ibfd.org/>

<http://www.ato.gov.au/>

<http://www.ird.govt.nz/>

<http://www.mof.go.jp/>

세법연구 10-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김태훈 · 마정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35-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